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6회 임시회
2019.10.18.(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9년 10월 08일

○ 회부일자: 2019년 10월 11일

3.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1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3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5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2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7,971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기관별 출연 개요 >>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연구원	-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400,00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
3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50,000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4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5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37,97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검토의견

○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

- 각 기관별 관련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 출연계획안은 적의 제출되었음

구 분	관 련 근 거	비고
충 북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종합의견

1 충북연구원

- 충북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사용 등으로 인해 자체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재원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13	16	17.3	20.0	27.5	27.5	31.4	36.5	44.0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 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67	100	200	150	200	200	250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도별	정책연구과제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방안 연구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7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2016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
2015	충북도내 남부.북부권역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

3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사업,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사업 등 크게 3가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7,196	5,000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694	657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 시도별 재정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2016	2017	2018	2019
180	60	60	60	60

⑤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설립)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도(A)		**691**	**52**	**52**	**81**	**85**	**80**	**102**	**118**	**121**	**129**
충북(B)		1,555	111	118	187	193	190	227	256	273	285
전국(C)		**60,976**	**4,094**	**4,635**	**6,587**	**7,712**	**7,199**	**9,066**	**9,580**	**12,102**	**10,843**
비율	A/C	1.13%	1.27%	1.12%	1.23%	1.10%	1.11%	1.13%	1.23%	1.00%	1.19%
	B/C	2.55%	2.71%	2.55%	2.84%	2.50%	2.64%	2.50%	2.67%	2.26%	2.63%

※ '11~'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13년부터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참고 1 기관별 참고자료

1 충북연구원

가) 기본현황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 설 립 일: 1990. 5. 15.
- 설립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한「재단법인」
- 근무직원

구분	합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정원	39	1	28	10
현원	35	1	27	7

나) 주요사무

실·부명	주　요　사　무
기획경영실 (연구행정과)	◦ 연구사업의 기획・조정・평가・관리 ◦ 제규정 및 직원인사, 복무관리 등 총무인사 업무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회계 업무 등 ◦ 정보자료실 운영 등 지식정보 관련 업무 ◦ 대외협력 및 연구원 성과 홍보 업무
성장동력연구부	◦ 지역경제,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과학기술, R&D ◦ 농업・농촌 정책, 공공경제, 국제통상 등 미래성장동력 연구
공간창조연구부	◦ 도시・지역・농촌 계획, 시가지재생 및 균형발전, 산업단지 ◦ 도시설계 및 경관계획, 인구, 정주환경, 건축・주택 정책, 교통 및 물류, SOC 등 성장 기반조성 연구
상생발전연구부	◦ 관광일반, 문화경제, 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 기후변화, 재난안전, 지방재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연구부	◦ 노동・고용・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 행정, 지방의회, 충북학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인문사회학 연구
남・북부 분원	◦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지원 ◦ 남・북부권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지원 등

실·부명		주 요 사 무
특별조직	충북학연구소	◦ 지역학 논의의 충북내 구심체 역할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강화 ◦ 충북 관련 자료의 발굴 및 보존으로 충북 관련 자료의 센터기능 담당
	지역발전연구센터	◦ 충북의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 연구 ◦ 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 및 시·군별 발전지표 조사
	충북경제교육센터	◦ 어린이·청소년 등 대상으로 도민 교육사업 추진 ◦ 경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충북미래기획센터	◦ 중앙정부·타시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이슈, 충북경제동향 등 분석 ◦ 빅데이터 연구를 통한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충북 평생교육 관련 연구조사 수행 ◦ 충북 평생학습 지표 및 프로그램 평가모형개발 연구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국책사업 예타평가 추진 지원 및 투융자사업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분석기법 연구 및 지자체 교육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사회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관리체계 확립 및 사업관리의 내실화 강화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 충북형 6차산업화 모델 구축 및 효율적인 지원·관리 ◦ 6차산업화 정책 기반 구축 및 네트워킹 활성화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기반 마련 ◦ 재난대비 DB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충청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시·군 컨설팅 ◦ 도시재생 신규 사어 발굴 및 전략기획 지원
자체조직	아시아연구센터	◦ 충북의 대 아시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 충북의 전략적 교류 거점 국가 및 산업 발굴 및 연구
	충북환경연구센터	◦ 충청북도 수질총량관리 대응 및 친환경발전 방안 연구 ◦ 환경이슈에 대한 금강수계 및 한강수계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

○ 설 립 일 : 1984. 9.

○ 설립취지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시·도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발의 출연하여 설립

○ 인원현황: 90명(정규 81, 비정규 9)

○ 설립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 주요사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발전 연구사업 지원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

3 충북인재양성재단

가) 운영현황

○ 목　　적: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 발굴, 양성 및 관리
○ 근　　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 립 일: 2008. 2. 20
○ 정　　원: 6명(사무국장, 직원 5) ※ '18.9.6.기준 현원 : 4명(사무국장, 직원3)
○ 설립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한「재단법인」
○ 기금적립액 : 792억원(2018. 9월말 기준)
※ 2016년부터 도(50억) 및 시·군(35억) 출연금 중단
⇒ 기금 이자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도에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4.7억원)와 수도권장학금(1.8억원), 도내대학 장학금(0.4억원) 지원

나) 기금현황 : 802억 78백만원(누계)

('19. 10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년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일 반 기탁금	이자	기타 수입	계		
계	**45,396**	**28,000**	**545**	**3,014**	**7,316**	**16,753**	**1,372**	**102,396**	**22,118**	**80,278**
20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20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20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20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20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20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20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20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20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2017	620	-	-	-	154	1,805	34	2,613	1,827	786
2018	694	-	-	-	287	1,954	726	3,661	2,126	1,535
2019	657	-	-	-	276	1,289	49	2,271	1,742	529

3) 장학금 지원 실적(2008 ~ 2019. 10월말)

구 분	계	사업규모(명)						계	소요액(백만원)					
		'08~'14	'15	'16	'17	'18	'19		'08~'14	'15	'16	'17	'18	'19
계	11,671	6,752	1,096	1,099	1,094	1,131	499	15,839	9,607	1,417	1,426	1,341	1,413	635
성 적	8,616	5,016	800	800	800	800	400	10,988	6,803	930	930	930	930	465
수도권	585	180	90	90	90	90	45	1,170	360	180	180	180	180	90
특 기	777	498	74	73	74	58		786	531	65	66	68	56	-
곰두리	259	130	33	32	32	32		241	127	28	29	27	30	-
도 내 대 학	339	160	40	40	40	59	-	678	320	80	80	80	118	-
희 망	398	249	20	30	36	41	22	373	234	19	29	30	40	21
특 지	132	67	18	13	12	15	7	129	94	10	7	6	8	4
지 정	51	-	-	-	10	26	15	76		-	-	20	26	30
로스쿨	167	105	21	21	-	10	10	817	557	105	105	-	25	25
충 북 사 랑	195	195	-	-	-	-	-	110	110	-	-	-	-	-
연 구	40	40	-	-	-	-	-	366	366	-	-	-	-	-
꿈나무	95	95	-	-	-	-	-	86	86	-	-	-	-	-
복 지	11	11	-	-	-	-	-	15	15	-	-	-	-	-
HCN	6	6	-	-	-	-	-	4	4	-	-	-	-	-

※ 2019년 하반기 장학금 지원 계획

- 676명 선발, 총 868백만원 지원
- 장학생선발 심의(10.08.) → 최종 합격자 발표(10.14.) → 장학증서 수여(10.25.)
- 장학생선발 심의(10.10.) → 최종 합격자 발표(10.12.) → 장학증서 수여(10.26.)

4 지방공기업평가원

가. 기본현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

○ 설　　립 : 1992. 3월(지방자치경영협회) → 2016. 6월(지방공기업평가원/법정기관)

◈ 연　　혁
- '92. 3. 9 지방자치경영협회(재단법인) 설립 ※ 지자체 공동 출연으로 설립
- '92. 4.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 '94. 8.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00. 1. 1 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재단법인화)
- '11. 4. 1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16. 6. 1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으로 전환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정기관화, 출연근거 등 법에 명시

○ 인원현황 : 38명 / 1본부 1실 2센터 ※'18. 9월 기준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정책연구·교육 등

나. 2020년 시·도 출연금 배분 기준

○ 배분방법: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　　모: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5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2	**0.5~0.7이하**	**30**
3	0.7~0.9이하	36
4	0.9초과 ~	42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1~15	24
2	**16~25**	**30**
3	26~35	36
4	36~	42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공기업수(공사.공단, 시군상하수도)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1, 공기업 수 평균 : 22.1(상하수도 포함)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9	2020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20**	**1,014**	**-6**	**10.060**	**-**	**516**	**375**	**-**	**498**
서울특별시	78	**78**		1.146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778	3	36	9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41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0.582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565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0.769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1.099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0.393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11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05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0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03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0.542	2	30	38	4	42
경상남도	72	**72**		0.726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	0.5	18

5 한국지방세연구원

가. 기본현황

○ 설 립 일: 2011. 2. 설립등기 ※ 2011. 4. 연구원개원

○ 설립목적: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 연구원장: 공석

○ 조직현황: 2본부1관10실5센터 / 총76명(현원 65명, 파견공무원등 11명)

나. 예산현황

○ 예 산 : 131.6억원(2019년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기 타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대출상환	기 타
108.4 (82%)	23.2 (18%)	63.8 (48%)	32.8 (25%)	9.1 (7%)	23.0 (18%)	2.9 (2%)

* 사업비는 수탁연구비 포함

참고 2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